



# 건설공사 공법·자재 선정 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침

2017. 6. 15.

제주특별자치도

# 목 차

I. 배 경 .....	3
II. 목 적 .....	3
III. 관련근거 .....	3
IV. 적용범위 및 시행일 .....	4
V. 신기술 공법선정 절차 .....	5
VI. 선정위원회 심의대상 및 기준 .....	7
VII.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	8
VIII. 평가항목 및 기준 .....	11
첨부. [서식. 1] 신기술 공법 선정 사전 평가표 .....	17
[서식. 2] 이행서약서(신기술업체).....	18
[서식. 3] 청렴서약서(신기술업체).....	19
[서식. 4] 하자보증기간, 표준 공사비 제안서 및 자기 평가서(신기술업체).....	20
[서식. 5] 청렴서약서(심의위원).....	21
[서식. 6] 신기술 공법 선정 평가표(위원평가).....	22
[서식. 7] 심의 의결서.....	23
[서식. 8] 동의서(회사대표).....	24
[서식. 9] 공법, 자재 선정 정량평가 확인서.....	25

# 건설공사 공법자재 선정 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침

[2017.6.15.시행], [2017.9.29. 일부개정]

## I. 배 경

- 최근 하천교량 특정공법 선정 관련 부당한 특혜의혹 및 행정불신을 초래함에 따라 공법선정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여 관련 비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하여 개선방안 마련

### [특허와 신기술]

- 특허, 실용신안은 지적재산권으로서 특허청에서 심사하여 등록함
  - 특허의 요건은 신규성, 유일성 등을 조사, 그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등록
- 건설신기술의 경우는 국가인증제도로서 위 사항에 현장적응성을 추가
  - \* 현장적응성 : 공법으로서 국가가 이를 인정하고 널리 사용을 권고하게 됨
- 특허를 받았다 하더라도 실제에 응용이 부족하게 되면 신기술로 인정받기 어려움

### [교량 신기술(특허) 공법 선정 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 일반조건(특허권 등의 사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 신기술 및 특허공법 사용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규정에 의거 설계전에 계약담당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함
  - 신기술(특허) 등을 공사설계에 반영하려는 경우에는 기본설계, 실시설계 전에 기술보유자와 사용협약 체결을 하여야 함.

## II. 목 적

- 특허 및 신기술 등 특정공법·자재 선정 관련 「건설공사 공법·자재 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증대하고자 함

## III. 관련 근거

- 국토부 훈령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 등에 관한 기준, '14.12.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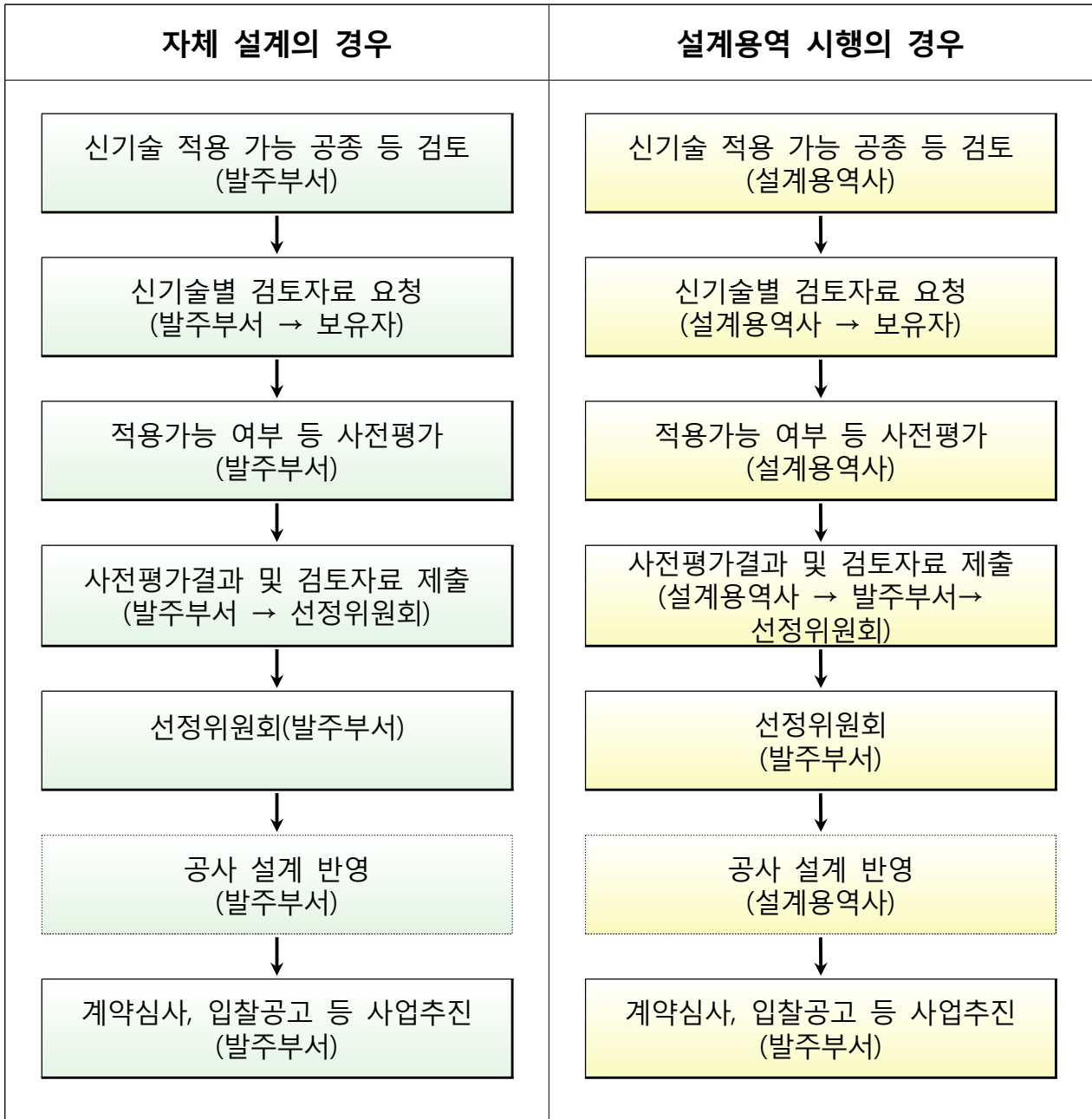
- ◆ 제4조 (위원회의 심의 등)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 시행시 다음 각 호의 1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1. 건설공사에 반영할 신기술의 설계, 시공, 계약방법, 활용범위 등의 적정성 여부
    - \* 특정공법 심의관련 세부 운영절차에 대한 관련법령이나 규정 없음
  - ② 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때에는 그 결과를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발주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된 신기술에 대하여 현장여건이 변동이 있거나 신기술개발자가 신기술제공을 거부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아 당해 신기술을 타 공법으로 설계변경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IV. 적용범위 및 시행일

- (적용범위) 본 기준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직속기관 및 사업소, 행정사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설계시 특정공법·자재를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본 기준은 특허 및 신기술을 설계에 반영하고자 할 경우 특정공법 및 자재를 선정하는 일반적인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발주부서에서 본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해당공사의 특성상 본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본 내용을 기초로 활용하거나,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적용기준 및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 (시행일) 본 기준은 2017. 6. 15일 이후 발주하는 실시설계용역 및 건설공사 설계변경시에 적용한다.  
 단, 2017. 6. 15일 이전에 시행중인 실시설계용역에 대하여는 발주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 V. 신기술 공법선정 절차

### 가. 업무흐름도



### 나. 평가자료 접수

- 평가대상은 해당 공사의 계약 예정시기를 고려하여 신기술 보호 기간 내에 있는 적용 가능한 모든 공법 대상
- 발주기관(설계용역사)에서는 해당 신기술의 보유자로부터 평가에 다음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① 신기술 지정증서 사본
  - ② 지정당시 심사기준에 따라 작성된 설명자료(시방서 및 유지관리 지침서 포함)
  - ③ 신기술 지정 심사 등에 활용한 관련 자료
  - ④ 품질관리 항목별 최근 1년 이내의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 ⑤ 접수일 현재 진행 중인 실적을 포함한 활용실적 자료
  - ⑥ 회사의 신용도 확인 관련서류
  - ⑦ 이행서약서, 청렴서약서, 하자보증기간, 표준공사비 제안서 및 자기평가서 (서식 2, 3, 4)
  - ⑧ 기타 발주기관에서 필요한 관계자료 등
- 발주기관 담당자는 선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자료가 모두 제출되었는지 확인하고 제출 자료가 부실하여 평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자료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시한 기간 동안 자료가 보완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출된 자료 중 공법선정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다. 사전평가 실시

- 발주기관은 제출된 신기술 공법 및 자재에 대하여 선정위원회 개최 전에 사전 평가를 실시하고 적정, 부적정 결과를 선정위원회에 제출
  - 설계용역 시행시는 설계용역사가 시행, 발주기관에서 확인
  - 사전평가 실시한 후 당해 건설공사에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공법·자재를 선정위원회 평가대상으로 결정
- 접수된 신기술이 하나일 경우 또는 사전평가 결과 적용 가능한 신기술이 하나일 경우에는 사전평가 결과 및 발주기관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부서장 방침을 득하여 결정(공법·자재선정위원회는 생략할 수 있다.)
- 사전설명회 개최
  - ① 개최시기 : 선정위원회 구성 이전
  - ② 참석대상 : 발주부서, 설계용역사, 공법·자재 제안회사 관계자 등

③ 설명회 내용

- 공법·자재심의 주요방침 및 심의·평가 방법 사전설명
- 참여회사별 동의서 제출(서식 8)

## VI. 선정위원회 심의대상 및 기준(2017.9.29.개정)

### 가. 심의대상

- 도로, 하천, 항만, 상하수도, 지역개발사업 등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 포함)에서 직접 발주하는 사업
- 대상분야 및 적용기준
  - 특허, 신기술 및 실용신안 등 독점적인 기술에 의한 공법 및 자재 중
    - 특허 및 신기술 공법 : 공종별 추정금액 1억원 이상
    - 자재 : 품목별 추정금액 1억원 이상
  - \* 심의를 통해 선정된 특정공법 및 자재 변경 시 반드시 재심의 실시
- 특정공법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2017.9.29.추가)

#### □ 특정공법의 범위

⇒ **인증신기술 및 미인증 신기술을 총칭하며 일반적인 공법이 아닌 독점적인 기술을 말한다.**

- 인증 신기술 : 관계 중앙행정기관(국토부, 환경부, 산자부 등)의 장이 인증한 신기술
- 미인증 신기술 : 인증 신기술에 해당하지 않으나, 특허, 실용신안 등을 받은 공법(신자재 포함)으로 건설 및 유지관리 시 원가절감, 품질제고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신형식 교량 등)

#### ○ 공법(자재) 선정위원회 운영이외의 선정 관련(2017.9.29.추가)

- ① 대상기준 미만 건설공사는 「공법(자재)선정위원회」를 별도 구성하지 않고 공법(자재)의 선정을 발주부서에서 자체 위원회를 활용한다.
- ② 긴급 발주가 요구되는 “재해복구사업 및 유지보수사업 등” 부득이한 경우 발주부서에서 자체 위원회를 개최하여 공법(자재)를 선정할 수 있다.

- ③ 위 ①항 및 ②항에 의한 공법(자재) 선정시에 선정절차 및 방법은 발주부서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체 실정에 맞게 운영한다.

## 나. 심의기준

- (심의시기) 실시설계 시, 실시설계 완료 후 3년 이상 경과되어 발주 설계시 또는 공사시행 중 설계변경 시
- (심의내용) 특정공법 설계반영 및 현장적용 등의 적정성

## 다. 심의요청

- 발주부서에서 사전평가 등에 의해 3~5개의 평가대상 선정 제출
  - 신기술 가능 공종 검토(설계용역사) ⇒ 신기술별 검토자료 요청(설계용역사→보유자) ⇒ 적용가능여부 등 사전평가(설계용역사) ⇒ 사전평가제출(설계용역사→발주기관) ⇒ 선정위원회(부의·확정)
- 심의대상 제출 시 정량평가 및 사전평가 결과를 첨부하여 제출

## Ⅶ.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가. 선정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

- 선정위원회는 내부 및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 이상으로 하며 이중 외부위원은 50%이상 구성한다.
  - 위원중 외부위원 후보자는 관련분야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각 발주기관(부서)의 추천을 받아 제주특별자치도(도시건설과)에서 일괄 Pool(30~50명)로 구성·관리한다.
  - 최종 위원 선정은 발주부서에서 외부위원 후보자 중에서 심의 개최일 2~3일전 청렴감찰단(청렴감찰담당) 입회하에 추첨으로 선정한다.
- 외부위원은 관련분야 아래의 자격을 갖춘 자로 선임한다.
  - 중앙기술심의위원회 및 지방기술심의위원회 위원
  - 건설 관련 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급 이상
  - 해당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



- 해당분야의 기술사
- 내부위원은 시설택 5급이상 공무원으로 해당분야 근무경험이 있는 자
- 위원장은 발주기관의 장(4급 부서장, 사업소장, 행정시 국장 등)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장이 위원장 지명(평가 미참여)
- 간사는 발주기관(부서)의 담당급으로 하고 위원회 운영 및 회의록 작성 등 수행
- 위원 제척·기피·회피대상
  - 평가대상 신기술과 관련된 용역 수행, 기술개발에 참여한 자
  - 최근 3년 이내 평가대상 신기술 보유업체 재직자 및 재직자
  - 당해 설계용역 또는 건설공사의 시행 관련 이해당사자
  - 기타 발주청이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 나. 위원회 운영

- 재적위원 2/3이상 출석으로 개최하고 참석위원 1/2이상 찬성으로 결정
- 선정위원회 평가 관련자료 사전 배포금지 및 위원명단 개최일 까지 비공개(특허 및 신기술보유자에 한함)
- 선정위원은 위원회에서 인지한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특정인의 이익에 활용되지 않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를 수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서는 위원회 개최 전 청렴서약서 징구(서식 5)
- 심의자료는 2~3일 전에 배부하여 심의위원 검토기간 확보
- 위원회 개최시 신기술 보유자 참석은 배제하고, 발주기관은 평가시 공사개요, 시설물현황, 공사수행 제반여건, 평가대상 신기술의 내용,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등을 위원에게 설명
- 평가대상 신기술별로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는 사전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발주기관 또는 설계용역사가 답변
- 위원회는 설계 중 신기술 적용 공종의 범위 및 공사의 제반 여건, 관계규정 등을 고려하여 토론 후 의결
- 적용가능으로 결정된 신기술에 대해서 평가점수에 따라 순위를 결

정하여 최종 공법선정 결과 의결(서식 7)

- 신기술간 평가결과 동점 발생시 해당 신기술만을 대상으로 다시 채점하여 순위를 구분하고 재평가 결과시도 동점인 경우 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
- 발주기관은 선정위원회 운영시 진행과정에 대하여 사진촬영 및 평가자료를 향후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관
- 선정위원회 운영과정은 공개 원칙
  - 평가방법과 선정결과는 도 및 행정시 홈페이지에 공개
  - 이의신청 등이 있을 경우 선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의사결정

#### 다. 평가방법

- 사전평가는 항목별로 적정, 부적정과 우수, 보통, 미흡 등으로 평가하여 위원회 평가의 검토 자료로 활용(서식 1)
- 평가방법은 정성평가(90%)와 정량평가(10%)를 합산하여 산정
  - 정성평가 : 위원별로 현장여건, 신청 등을 참조하여 차등평가(서식 6)
  - 정량평가 : 발주부서에서 지역업체 가점 및 감점을 평가하여 제시(서식 9)
- 정성평가는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평가항목별 평가등급(수, 우, 미, 양, 가)을 구분, 항목별 배점을 반영한 평가점수의 합계를 산정하여
  - 우선순위에 따라 차등 10%를 적용한 위원별 차등점수 산정
  - 평가대상별로 위원별 차등점수를 합산하여 평가점수 산정

#### 라. 공법설명

- 발주부서(설계사)에서 설계현황 및 사업개요 제안 설명
- 평가대상별 발표순서는 발주부서 심의요청 순으로 발표
- 원활한 심의진행을 위해 평가대상 발표는 1회로 한정함
- 평가대상별 설명시간은 5분 이내로 한정

- 심의위원별 일문일답(위원장 승인시 연장 가능)
  - 평가대상별 위원 질의는 1건 이내(질문 1분, 답변 2분)
- 평가대상별 참가인수는 4인 이내(발표1, 전문가3-컴퓨터운영 포함)

## Ⅷ. 평가항목 및 기준

### 가. 사전평가 항목 및 기준

- 요구품질 : 적정 · 부적정 평가
    - 공사 목적달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준으로 강도, 내구성 등 관련 설계기준 및 KS규격 등 적정여부 판단
  - 시공성 : 공기단축, 현장 적용 가능성 등 평가
  - 경제성 : 공사비 절감, 유지관리비 절감 등 평가
  - 기 타 : 객관적 자료, 유지관리 편의성, 사후평가 이력 관리자료 등 평가
- \* 시공성, 경제성, 기타항목은 우수, 보통, 미흡, 부적정(공사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으로 평가

## 나. 위원별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배 점	A사	B사	C사	D사	E사
1. 시공성 (20)	- 시공의 용이성, 안전성	10					
	- 현장여건과 적합정도	5					
	- 공사기간 적정여부 등	5					
2. 경제성 (20)	- 설계단가 적정성	10					
	- 생애주기 측면에서 경제성	10					
3. 유지관리 (20)	- 하자 발생 가능성	10					
	- 하자점사의 신속 및 편리성	5					
	- 하자보수의 용이성	5					
4. 내구성 및 환경영향 (20)	- 공법의 구조적 안전성	10					
	- 자재의 내구·내화·내습성	5					
	-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5					
5. 경관성 (10)	- 색상, 모양 등 디자인	5					
	- 주변 환경과의 조화	5					
6. 지역업체 가 점 (10)	- 특허·신기술을 등록한 도내기업	10					
	- 전용실시권을 등록한 도내기업	5					
	- 통상실시권을 등록한 도내기업	3					
감 점	- 공사비 10%~5% 증액발생	△10					
	- 공사비 5%미만 증액 발생	△5					
합 계		100					

※ 지역업체 가점 및 감점사항은 발주부서에서 평가하여 제시

**【세부평가기준】**

(가) 평가는 상대적 평가를 실시하며, 심의위원은 아래 표에 의하여 평가항목 별로 업체수에 따라 평가등급(수, 우, 미, 양, 가)을 배분하고 항목별 배점을 반영한 평가업체의 합계점수를 산출

\* 단, 정량평가는 차등평가에서 제외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6	1	2	1	1	1
4	1	2	1			7	1	2	2	1	1
5	1	2	1	1							

(나) 산정된 합계점수 우선순위에 의하여 1위 업체 합계점수를 기준으로 차등 평가 폭 10%을 적용한 환산점수 산정

(다) 위원별로 산정된 환산점수를 합산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업체의 공법 선정

(라) 평점은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두자리에서 반올림

(마) ‘신기술’이란 신기술을 개발하여 공법 심의요청일 현재 보호 기간내에 있는 신기술이며 ‘도내기업’은 도내에 본사를 두고 영업중인 기업

- 신기술 또는 특허를 직접 등록한 도내기업 : 10점
- 타 시도기업 신기술 또는 특허에 대한 전용 실시권을 등록한 도내기업 : 5점
- 타 시도기업 신기술 또는 특허에 대한 통상 실시권을 등록한 도내기업 : 3점

(바) 과거 공법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공법의 공사비(총공사비기준)가 10% 미만으로 증액이 발생한 경우 공법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감점 부여(10%이상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간 심의대상에서 제외)

- 공사비 증액이 10~5% 발생시 : 10점 감점
- 공사비 증액이 5%미만 발생시 : 5점 감점

## **IX. 부 칙(2017.9.29.)**

- (적용일) 특정공법의 범위 및 공법(자재) 선정위원회 운영이외의 선정 관련에 대한 기준은 2017.9.29.일 이후 발주하는 실시설계용역 및 건설공사 설계 변경시에 적용한다.

【참고 1 : 세부평가 참고자료】

평가 항목		세부기준 및 방법
평가항목	평가기준	
1. 시공성	- 시공의 용이성, 안전성	- 공법적용으로 공정이 단순해져 시공이 간편해 지거나 편리한 정도를 판단 - 현장시공과 공장시공 장·단점을 비교 판단 - 크레인 등 중장비 이용 및 안전사고 위험성 판단
	- 현장여건과 적합정도	- 주변환경(가옥 등)을 고려 형하고 제약 정도 판단 - 도·농지역을 고려 작업공간 최소여부 판단
	- 공사기간 적정여부 등	- 하부구조와 상부구조 동시시공 가능여부 판단 - 공법별 제작 및 설치기간을 비교 판단
2. 경제성	- 표준공사비 적정성	- 심의대상 공법의 평균단가를 적용 금액을 비교
	- 생애주기비용 측면에서 경제성	- 초기투입비용과 공법별 생애주기를 고려한 유지관리비(LCC비용)를 비교 판단
3. 유지관리	- 하자 발생 가능성	- 공법별 하자 발생 가능성을 검토 판단
	- 하자검사의 신속 및 편리성	- 하자검사가 용이하게 각부재의 육안식별이 가능한 부재노출 정도 판단 - 밀폐형식은 인력이 입·출입이 가능정도 판단
	- 하자보수의 간편성	- 하자보수할 수 있는 공간확보 정도 - 하자발생시 부재교체 가능 정도
4. 내구성 및 환경영향	- 공법의 구조적 안전성	- 시공실적과 시험성과 등을 검토하여 공법의 구조적 안정성 검토
	- 자재의 내구·내화·내습성	- 강재구조와 콘크리트구조의 장단점 비교
	-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 공사중 및 유지관리에 따라 환경피해 발생 가능성 비교 판단
5. 경관성	- 색상, 모양 등 디자인	- 색상, 모양등의 독창성과 편리성 검토
	- 주변 환경과의 조화	- 주변환경과 조화된 경관성 검토

주 : 지역업체 가점 및 감점은 정량평가로 심의부서에서 위원들에게 제시함

【참고 2 : 항목별 차등평가 점수】

업체수	배 점	평가등급					비 고
		수 ×1.0 (업체수)	우 ×0.9 (업체수)	미 ×0.8 (업체수)	양 ×0.7 (업체수)	가× 0.6 (업체수)	
2개업체	10	10.0 (1)	9.0 (1)	-	-	-	
	5	5.0 (1)	4.5 (1)	-	-	-	
	3	3.0 (1)	2.7 (1)	-	-	-	
3개업체	10	10.0 (1)	9.0 (1)	8.0 (1)	-	-	
	5	5.0 (1)	4.5 (1)	4.0 (1)	-	-	
	3	3.0 (1)	2.7 (1)	2.4 (1)	-	-	
4개업체	10	10.0 (1)	9.0 (2)	8.0 (1)	-	-	
	5	5.0 (1)	4.5 (2)	4.0 (1)	-	-	
	3	3.0 (1)	2.7 (2)	2.4 (1)	-	-	
5개업체	10	10.0 (1)	9.0 (2)	8.0 (1)	7.0 (1)	-	
	5	5.0 (1)	4.5 (2)	4.0 (1)	3.5 (1)	-	
	3	3.0 (1)	2.7 (2)	2.4 (1)	2.1 (1)	-	
6개업체	10	10.0 (1)	9.0 (2)	8.0 (1)	7.0 (1)	6.0 (1)	
	5	5.0 (1)	4.5 (2)	4.0 (1)	3.5 (1)	3.0 (1)	
	3	3.0 (1)	2.7 (2)	2.4 (1)	2.1 (1)	1.8 (1)	
7개업체	10	10.0 (1)	9.0 (2)	8.0 (2)	7.0 (1)	6.0 (1)	
	5	5.0 (1)	4.5 (2)	4.0 (2)	3.5 (1)	3.0 (1)	
	3	3.0 (1)	2.7 (2)	2.4 (2)	2.1 (1)	1.8 (1)	





[서식 2]

## 이 행 서 약 서 (신기술업체)

○ 공사명 :

본 사에서 제출하여 평가에 활용되는 모든 자료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된 사항으로 위 공사에 적용시 본 사에서 제시한 내용과 같이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명)

대표이사

(서명)

발주기관의 장 귀하

[서식 3]

## 청 럽 서 약 서 (신기술업체)

○ 공사명 :

본인은 위 공사의 공법·자재선정위원회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  
위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고 공정하게 평가 및 입찰에 참여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위반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명)

대표이사

(서명)

발주기관의 장 귀하

[서식 4]

# 하자보증기간, 표준 공사비 제안서 및 자기 평가서 (신기술업체)

○ 신 기 술 명 :

○ 신기술 보유자 :

## 1. 업체 제안사항(예시)

가. 하자보증기간 :           년 (1~10년 사이 제시)

나. 표준 공사비(단위당) :                               원(제경비 포함)

\* 표준공사비는 해당 공사의 주요 공종으로 제시

## 2. 자기평가

구 분	KS규정 등 비교기준	성 능	평가내용	비 고

\* 자기평가 요구품질 항목은 발주기관에서 제시

20 . . . . .

회사명 :

주 소

대표자 :

(인)

작성자 :

(☎ :

FAX:

)

**발주기관장 귀 하**

첨부 : 표준 공사비 산출내역서 및 기초자료 1부.

※ 업체에서 제시한 표준공사비는 공법 선정시 평가자료 및 공사 발주시 설계 참고 자료로 활용되므로 단순히 공법 선정에 유리하도록 낮은 가격을 제시하여 계약이행 및 공사품질 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공법 적용제외 할 수 있음

[서식 5]

## 청 렬 서 약 서

○ 공 사 명 :

○ 발주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과

본인은 위 공사의 공법·자재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받아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향응 등을 제공 받지 않고 기술자의 양심과 도리로 공정하게 심의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위반시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 하겠습니다.

2017 . . .

서약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서명)

발주기관장 귀하

[서식 6]

## 신기술 공법선정 평가표(위원평가)

○ 공 사 명 :

○ 신기술명 :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배점	A사	B사	C사	D사	E사
1. 시공성 (20)	- 시공의 용이성, 안전성	10					
	- 현장여건과 적합정도	5					
	- 공사기간 적정여부 등	5					
2. 경제성 (20)	- 설계단가 적정성	10					
	- 생애주기 측면에서 경제성	10					
3. 유지관리 (20)	- 하자 발생 가능성	10					
	- 하자검사의 신속 및 편리성	5					
	- 하자보수의 용이성	5					
4. 내구성 및 환경영향 (20)	- 공법의 구조적 안전성	10					
	- 자재의 내구·내화·내습성	5					
	-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5					
5. 경관성 (10)	- 색상, 모양 등 디자인	5					
	- 주변 환경과의 조화	5					
6. 지역업체 가 점 (10)	- 특허·신기술을 등록한 도내기업	10					
	- 전용실시권을 등록한 도내기업	5					
	- 통상실시권을 등록한 도내기업	3					
감 점	- 공사비 10%~5% 증액발생	△10					
	- 공사비 5%미만 증액 발생	△5					
합 계		100					

20    년    월    일

평가위원 :

(서명)

[서식 7]

## 심의 의결서

○ 공 사 명 :

○ 신기술명 :

평가위원명	A공법	B공법	C공법	D공법	E공법	위원확인
○○○ 위원						
○○○ 위원						
○○○ 위원						
○○○ 위원						
○○○ 위원						
○○○ 위원						
○○○ 위원						
○○○ 위원						
합 계	0	0	0	0	0	
평 점	0.00	0.00	0.00	0.00	0.00	

○ 심의결과 : \_\_\_\_\_ 공법 선정

2017년도 제 회 제주특별자치도 공법·자재 선정 위원회 심의결과  
\_\_\_\_\_ 공법은 심의결과와 같이 의결함

발주기관장 귀하

## 동 의 서

○ 공 사 명 :

○ 발 주 청 : 제주특별자치도(○○○○과)

1. 당 사는 위 공사의 공법·자재선정위원회 심의에 참여한 업체로서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고 공법선정위원회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협조하겠으며
2. 제주특별자치도 공법·자재 선정위원회가 운영하고자 하는 심의일정과 평가방법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의하며, 향후 이에 대한 일체의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동의합니다.

2017. .

회사명 :

대표자 :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서식 9]

# ○○○○공사 실시설계용역 공법·자재 선정 정량평가 확인서

평가대상 :

○ 사업량 :

공법심의 제안서 평가표

연번	업 체 명	공법·자재명	특허권자	사 업 비 (특허액)	정량평가 결과(점수)	
					지역업체 점수	가·감점
				( )		
				( )		
				( )		
				( )		
				( )		

○ 작성자 : 소속  
○ 확인자 : 소속

직위(급)  
직위(급)

성명 (인)  
성명 (인)

제주특별자치도 공법·자재선정위원회 위원장 귀하